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년월일 : '96.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등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음.

## 2. 주요골자

- 국민운동지원과 + 생활체육과 → 사회진흥과
- 부과과 → 부과1과, 부과2과
- 국·과 명칭변경 → 시민국(시민생활국), 민방위과(민방위재난관리과), 산업과(지역경제과), 환경과(환경관리과), 청소과(생활환경과), 하수과(치수과)
- 계통폐합 및 신설 → 국제교류계, 재난관리계, 중소기업계, 세외수입계, 구정연구계, 노인복지계

##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통령령 제 14647호)

## 4. 개 정 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민국”을 “시민생활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를 “사회진흥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동조 제2항 제3호중 “지방의회”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6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건전생활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건전생활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시운영계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5. 병사에 관한 사항
6.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안전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제1항 중 “부과과”를 “부과1과·부과2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과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세, 등록세, 농지세, 지역개발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⑤ 부과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세, 도축세, 경주·마권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2. 면허세, 주민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시민국”을 각각 “시민생활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5항중 “산업과”를 각각 “지역경제과”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6항중 “환경과”를 각각 “환경관리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7항 중 “청소과”를 각각 “생활환경과”로 하며, 동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동조 제3항 제2호중 “노인복지”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중 “하수과”를 각각 “치수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실.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재무국·<u>시민국</u>·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을 둔다.</p> <p>제6조(총무국)① 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u>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u> 및 여권과를 둔다.</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u>지방의회·동행정에 관한 사항</u></p> <p>4.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p> <p>③ (생략)</p> <p>1~4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p>④ <u>국민운동지원과의</u>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2. 새마을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제2조(실. 국의 설치) -----</p> <p>-----</p> <p>-----</p> <p style="padding-left: 20px;"><u>시민생활국</u> -----</p> <p>제6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u>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u>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동행정에 관한 사항</p> <p>4. <u>국제교류에 관한 사항</u></p> <p>5.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p> <p>③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u>지방의회에 관한 사항</u></p> <p>④ <u>사회진흥과의</u>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2. <u>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 (안)
<p>4. 바르게 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5.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⑤ <u>생활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2. 생활체육·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3.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p> <p>⑥ <u>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2. 전시운영계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3.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p> <p>4.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p> <p>5. 병사에 관한 사항</p>	<p>4. <u>생활체육, 건전생활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p> <p>5. <u>생활체육, 건전생활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6. <u>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u></p> <p>⑤ <u>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2. 전시운영계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3.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p> <p>4.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p> <p>5. 병사에 관한 사항</p> <p>6. <u>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u></p> <p>7. <u>안전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u></p>
<p>⑦ (생략)</p> <p>제7조(재무국) ①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관리과, <u>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u></p> <p>② (생략)</p> <p>③ 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u>세외수입 과장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p>⑥ (현행 제6조 제7항과 같음)</p> <p>제7조(재무국) ①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관리과, <u>부과1과, 부과2과 및 지적과를 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 (안)
<p>④ <u>부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경주·마권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2.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및 주민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3.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4.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ol>	<p>④ <u>부과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세, 등록세, 농지세, 지역개발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2.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3.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4.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ol> <p>⑤ <u>부과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세, 도축세, 경주·마권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2. 면허세, 주민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3.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4.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ol>
<p>⑤ (생략)</p> <p>제8조(시민국) ① <u>시민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u></p>	<p>⑥ (현행 제7조 제5항과 같음)</p> <p>제8조(시민생활국) ① <u>시민생활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및 생활환경과를 둔다.</u></p>
<p>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생략)</li> </ol>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li>5. <u>노인복지업무에 관한 사항</u></li> <li>6. (현행 제8조 제2항 제5호와 같음)</li> </ol>
<p>③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노인복지·유아복지·가정의례에 관한 사항</u></li> <li>3. ~ 4. (생략)</li> </ol>	<p>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유아교육·가정의례에 관한 사항</li> <li>3. ~ 4. (현행과 같음)</li> </ol>
<p>④ (생략)</p> <p>⑤ <u>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생략)</li> </ol>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현행과 같음)</li> </ol>
<p>⑥ <u>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생략)</li> </ol>	<p>⑥ <u>환경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현행과 같음)</li> </ol>
<p>⑦ <u>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생략)</li> </ol>	<p>⑦ <u>생활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현행과 같음)</li> </ol>

현행	개정 (안)
제10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u>하수과</u>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③ (생략) ④ <u>하수과</u> 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⑤ (생략)	제10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u>치수과</u>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치수과</u> 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996. 2. 6.

행정재무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1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1996년 2월 6일 상정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등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국민운동지원과 + 생활체육과 → 사회진흥과
- 부과과 → 부과1과, 부과2과
- 국, 과 명칭변경 → 시민국(시민생활국), 민방위과(민방위재난관리과), 산업과(지역경제과), 환경과(환경관리과), 청소과(생활환경과), 하수과(치수과)
- 계 통폐합 및 신설 → 국제교류계, 재난관리계, 중소기업계, 세외수입계, 구정연구계, 노인복지계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현행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보면 자치구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는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기구의 설치 기준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타기관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또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과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동조례 개정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편의와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구정을 위하여 적절하고, 또한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審査結果 : 원 안 의 결